



가축복지법에 대한 유럽의 반응

— 흥 보 부 —

금년초에 EC가맹 12개나라는 집약적 농장에 있어서 돼지의 복지 보호를 위한 규칙의 초안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농업단체와 정부의 대표에 의한 엄격한 논의를 거쳐 왔으나, '90년대 중에는 서유럽 각국의 농장에서 돼지의 수용, 관리방법에 관한 일련의 규칙을 준수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EC는 신규농장의 경우엔 1990년 1월 1일부터, 기존 농장의 경우엔 1995년 1월까지의 규약에 따르는데 동의하였다. 현재로서는 신농장에 대하여는 1992년부터, 기존의 농장에 대하여는 1999년부터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 가축복지에 드는 비용

서독에서는 EC 초안의 몇가지 조항을 이미 전국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서독 양돈에 있어서 가축복지법의 경제적 영향의 조사는 다른 유럽 나라 양돈장의 비용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알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본다.

조사는 브라운슈바이크농업연구센타의 경제부문에 있어 피터하인리히박사를 중심으로 행하여져 왔다. 피터하인리히박사는 가축복지법을 도입함으로써 돼지 1두당 1.2불의 비용이(생산비) 더 생긴다고 한다.

많은 생산자는 근대적(집약적) 생산기술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높아져 총수익

은 35~60% 감소할 것으로 본다. 큰 농장일수록 수익감소가 커짐은 당연하나, 특히 비교적 새농장에서는 증개축에 요하는 비용이 증가된다.

이들의 계산은 소위 「보다 좋은 복지상태」의 응용에 의해 얻어진다. 생산성이나 고기의 가격 개선의 효과를 고려한 위의 총비용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개선의 효과를 추측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나, 그들은 총비용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개선효과에 의한 이익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돼지 1두당의 비용은 1.8불로 된다.

하인리히박사는 1989년 유럽축산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복지적 양돈의 실천이 정말로 수익성이 좋은 것이라면 많은 생산자는 이미 그렇게 하고 (복지시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개선효과는 추가비용을 아주 적게 보충하고 있을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축복지에 수반되는 비용은 어떠한 형태로 증가할 것인가? 비용에는 시설의 이동, 생신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개축기간중에 생산성의 저하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그에 더하여 개축후에 출하두수는 처음에는 기술적인 혼란을 습득하기 까지 감소된다. 돈사당 생산두수도 수용밀도에 관한 규약때문에 저하할 것이다. 또 노동비와 광열비도 증가할 것이다.

〈표1〉 복지규칙의 영향

규칙	영향의 대상			
	투자	노동비	광열비	수익률의 개선
상의 설계재료	#	+	-	+
돈방의 상면벽	#		+	+
자동급이·급수기의수	+		+	?
깔짚의 공급	+	+	+	?
모돈의 운동성	#	+		?
비상용전원의설치	#		+	+

서독의 가축복지 표준을 기본으로 하면 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진다(표1, 그림1).

- 바닥의 재료와 형상: 주로 스노고상-개축비용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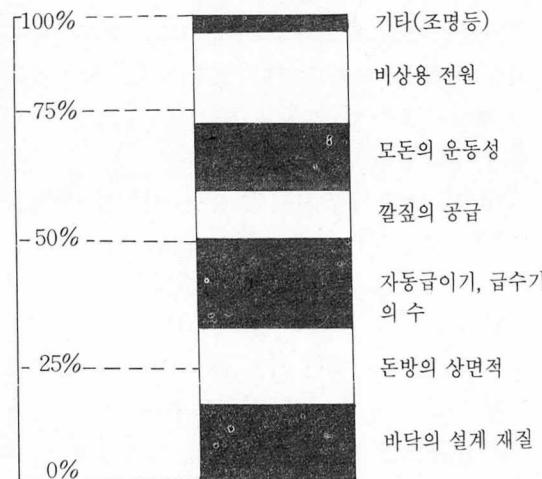
- 1두당 돈사의 너비: 1돈방당의 수용두수를 줄이든가 돈사를 증축한다.

- 자동급이기나 급수기당의 돼지의 두수-설비의 추가가 필요로 된다.

- 돼지의 쾌적함을 위한 깔짚 등의 공급-기술적인 문제와 노동력의 증가.

- 이유후 적어도 4주간은 모돈의 자유로운 운동을 보증한다-시설과 노동력의 증가.

- 대규모 경영에서의 비상용 동력원-비상용 동력원의 구입: 유지비와 광열, 노동비의 증대



돈사나 기타 설비가 10년 이하인 농장에서는 새로운 독일의 규칙을 달성하므로 인하여 설비, 광열비, 노동비가 단기적으로는 5~9%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3~4% 증가한다.

또 이들 세부분의 비용은 평균적인 독일의 농장 총수입의 28%에 해당된다. 이들 비용의 3.5%의 증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매상(賣上)을 1% 신장시키지 않으면 안되나, 소비자가 그만큼 값을 올려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생각해 보자. 1인당 연간 소비량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증가하는 소비액은 1인당 약 120엔이나 소비량이 적은 나라들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그만큼 적어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가축복지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에 저항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가축복지를 행하고 있는 농장에서 생산하는 고기를 일반 농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덴마크, 화란, 스위스, 서독 등에서는 이것을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계획이 존재하고 있으나,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持分)이 적고 양돈업 전체로서도 점유율의 신장은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령 갑작스러운 경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持分)이 그럭저럭 10~15%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 각국의 차이점

덴마크 도축협회는 EC에서 제정한 초안이 법률화 되었을 경우 덴마크 양돈장의 생산비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독자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돈사나 관리의 변화에 따라 약 480억 엔이 소요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도살된 돼지 1두당 970엔이 된다.

지방의 양돈협회는 집약적 양돈이 아직 행하

여지지 않고 있는 지방에서는 초안을 준수하는데 부담이 적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EC의 공통적인 표준에 의한 부담을 환영하고 있는 한편, 이 협회는 근대적 양돈을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의논하고 있다.

다른 양돈단체는 EC 초안의 제한을 보다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엄한 표준을 추가할 입장을 갖고 있다.

EC는 가맹국 국내의 집약적 양돈장에 대하여 초안에 나타낸 것보다 그 이상의 엄격한 규칙의 유지 적용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돼지의 관리방법을 규제하는 복지적 법률은 서독, 화란, 덴마크, 영국에서는 이미 전국규모로 제정되어 있다. 양돈가의 대표는 복지규제를 지키고 있는 나라들이 규제를 제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에 비하여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서독의 생산자단체 대표는 「우리들의 의견은, EC는 1993년까지에 공통의 규칙을 하나 제정하고, 그 중에서 양돈의 중요점 및 요구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영국의 생산자단체는 「모든 나라에 공통의 규칙을 설정하면 생산자에게는 동일한 목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개의 나라에서 특별히 엄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축복지법을 강화하는 표적의 하나에 모돈의 스톨이 있다. 영국정부는 영국가축복지회의 조언에 의해 영국내로부터 스톨 돈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스톨의 폐지는 EC 각국에서 모두 적용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같은 판단은 자돈의 육성용 돈방에도 응용된다.

그러함에도 다른 EC각국은 자국내의 시스템을 폐지했다고 해서 시스템을 폐지하지 않고 있

는 다른 나라로부터 생돈이나 돈육의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 이 일은 생산자에 있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가축복지법이 모든 생산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한 법률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3. 향후 네덜란드의 가축복지법 전망

네덜란드의 가축복지법은 199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 제안되어 최근 법률작성의 작업에 들어갔다. 네덜란드의 어떤 종축 생산자는 이 법률이 제정되어질 때에는 그 세부적인 면이 다소 변경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하고 있다.

1991년에 제정할 경우 신규농장은 바로 이에 대응할 수 있으나, 기존의 농장에서는 오랜 전환기간이 필요로 하게 된다. 법률시행시기의 자연은 특별규약에 의한 기간에 따라 결정한다.

가령 적어도 40%의 분만돈방을 평상으로 한다고 하는 규칙을 실시하는 데는 12년이라는 전환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유자돈용의 전면스노코상 폐지에는 15년, 비육돈의 최저 필요 상면적의 달성에는 2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와같은 이치로 모든 스톨길이는 사조(銅槽)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이되어야 한다고 하는 규칙은 15~20년이 걸리게 된다고 한다. 법률이 제정되어지면 분만, 육성, 비육돈사의 전체 스노코(발상)상은 폐지되어질 것이다. 또 이유모돈, 임신모돈의 개별 스톨은 군사돈사를 도입할 수 있는 경우 폐지되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이 규칙에는 돈사내를 어둡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병돈을 위해서는 특별 돈방을 설치하고 그 공간은 돈사전체의 약 2%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스노코상의 철망간격은 분만돈사에서는 10mm, 이유후의 돈방에서는 20mm로 하게 되어 있다. ■